[별표 25] [신설 2013.2.28]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정산 및 결제 절차

1.0 목적

규칙 제11.1.6조, 제11.1.7조, 제11.2.4조 등의 규정에 의거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정산 및 결제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여 원활한 공 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다. <개정 2020.7.8., 2022.5.31.>

2.0 적용범위

본 별표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의무이행비용 정산 및 결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0 책임

- 3.1 전력거래소이사장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의무이행비용 정산 및 결제 관련 업무 처리를 공 정하고 정확히 처리되도록 총괄 관리한다.
- 3.2 공급인증서 거래회원 공급인증서 거래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별표에서 정한대로 올바른 거래행위를 통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3.3 공급의무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의무이행비용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를 전력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에 대한 책임이 있다.

4.0 참고자료

- 4.1 신재생에너지법
- 4.2 전력거래소 정관

5.0 용어의 정의

- 5.1 공급인증서 거래회원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를 위하여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말하 며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전력거래소 정관 제2장 제2절에 따른다.
- 5.2 의무공급량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

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으로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지침"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양을 말한다.

- 5.3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 5.4 매도자 거래시장에서 공급인증서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5.5 매수자 거래시장에서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 5.6 주문 공급인증서 거래를 위하여 거래시장에 매도 또는 매수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을 말한다.
- 5.7 매도주문 매도자가 공급인증서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량과 가격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 다.
- 5.8 매수주문 매수자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기 위하여 수량과 가격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 다.
- 5.9 시가[신설 2017.2.28.] 현물시장 매매거래시간 개시 후 양방향 입찰방식에 따라 형성되는 최초의 가격을 말한다.
- 5.10 종가[신설 2017.2.28.] 현물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양방향 입찰방식에 따라 형성되는 최종 가격(기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5.11 기세[신설 2017.2.28.] 현물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양방향 입찰방식에 따른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6.2.4.2의 매매기준가격보다 낮은 매도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을, 높은 매수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주문접수 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중단되어 당일 중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세로 보지 아니한다.
- 5.12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용 발전기[신설 2017.12.29.]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공급의무자에게 의무이행비용 정산을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발전기를 말한다.

5.13 매도가능수량 [신설 2020.7.8.]

다음 각 호 중 제1호의 수량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 1. 회원이 소유하고 있는 수량
- 2. 당일 매도주문을 제출한 수량
- 3. 매매체결 후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수량
- 4.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매도제한수량
- 가. 현물시장 밖에서 매도한 수량
- 나. 그 밖에 발급취소 등의 사유로 공급인증서의 수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 상되는 수량
- 5.14 거래증거금 [신설 2020.7.8.]

수수료 등 매매거래에 소요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1. 매수주문을 접수한 경우 : 당일 접수한 매수주문 금액
- 2. 매수주문 후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 당일 취소 후 남은 나머지 매수주문 금액
- 5.15 거래증거금 계좌 [신설 2020.7.8.] <개정 2024.10.29.> 매수대금의 사전 징수를 위하여 결제은행에 개설한 전력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말하며, 거래증거금 계좌에서 발생한 결산 이자는 전력거래소의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업무(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개선 등)를 수행하는데 사용하다.
- 5.16 매수가능금액 [신설 2020.7.8.] 거래증거금 계좌에 납부한 금액에서 거래증거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 5.17 단일계약 [신설 2020.7.8.] 공급인증서 계약시장에서 하나의 발전설비에 체결된 계약건수가 1건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 5.18 다중계약 [신설 2020.7.8.] 공급인증서 계약시장에서 하나의 발전설비에 체결된 계약건수가 1건 초과일 경우를 말한다.

6.0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운영

- 6.1 거래회원 등록 및 현물시장 정산계좌 등록·변경절차 <삭제 2020.7.8.> [신 설 2022.5.31.]
- 6.1.1 거래회원 등록절차
- 6.1.1.1 거래회원 등록은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사업정보 포털을 이용하여 진행함을 워칙으로 한다.

- 6.1.1.2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사업정보 포털을 이용하여 거래회원 등록 시 필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변환하지 않은 경우고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사업정보 포털에 장애가 있는 경우 등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6.1.1.3 6.1.1.2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 전력거래소 는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사업정보 포털 등을 통해 거래회원 등록신청을 한 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6.1.1.4 대표자 외의 사용자가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사업정보 포털을 이용하여 위임 장을 제출할 경우 전자서명법에 의한 사업자 용도의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 6.1.2 현물시장 정산계좌 등록, 변경절차
- 6.1.2.1 현물시장 정산계좌 등록 및 변경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6.1.2.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현물시장 정산계좌 등록 및 변경 시 필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변환하지 않은 경우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등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6.1.2.3 6.1.2.2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 전력거래소 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등을 통해 정산계좌 등록신청을 한 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6.1.2.4 6.1.2.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할 경우 전자서명법에 의한 사업자 용도의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 6.1.2.5 6.1.2.2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에 대해 거래회원이 해당 전자문서 제출에 대한 전자서명을 한 날 이후에 거래회원은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 6.1.2.6 거래회원은 6.1.2.2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의 원본을 공급인증서 거래기 간 동안 보관하고,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회원 탈퇴 시 제출된 전자문서의 원본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6.2 양방향 입찰방식에 의한 거래
- 6.2.1 양방향 입찰방식의 주문
- 6.2.1.1 주문의 수량단위는 1REC로 하며 주문의 가격단위는 1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2.28.>
- 6.2.1.2 매도자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매도수량과 매도가격이 포함된 매도주문을 하여야 하며, 매도주문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완료된 공급인증서를 대상으로

하다.

- 6.2.1.3 매수자는 매수수량과 매수가격이 포함된 매수주문을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6.2.2 양방향 입찰방식의 주문시간
- 6.2.2.1 양방향 입찰방식에 의한 현물시장의 매도 및 매수주문시간은 현물시장 개장시간부터 폐장시간까지로 한다. <개정 2017.2.28.>
- 6.2.2.2 전력거래소는 규칙 제11.1.6조 제5항에 따라 매매거래시간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문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 6.2.2.3 매도주문 및 매수주문은 매매가 체결되기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번호변경 2017.2.28.>
- 6.2.2.4 주문시간이 경과하면 매도자 및 매수자는 주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번호변경 2017.2.28.>
- 6.2.3 양방향 입찰방식 주문의 효력 [신설 2017.2.28.]
- 6.2.3.1 주문은 접수된 때부터 당일 매매거래가 성립되는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당일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전력거래소는 주문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
 - 1. 6.2.6.4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 해당 중단기간 중 입력된 주문 (취소주문은 제외한다)
 - 2. 그 밖에 전력거래소가 주문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주문
- 6.2.3.2 주문이 접수된 후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주문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다른 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문의 효력은 정정주문을 접수한 때 발생한다.
- 6.2.3.3 계약시장 매매거래에 따른 수리되지 않은 계약건의 공급인증서에 대해서는 현물시장 참여를 제한한다. 단, 양방향 입찰방식 매매거래 주문의 효력은 인 정한다. <개정 2020.7.8.. 2024.10.29.>
- 6.2.3.4 <삭제 2020.7.8.>
- 6.2.4 양방향입찰방식 주문의 관리 [신설 2017.2.28.]
- 6.2.4.1 주문은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 "매매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상한가(주문을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이하같다)보다 높거나 하한가(주문을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이하같다)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2.4.2 매매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1. 최초 매매거래일(2017.03.28.)의 경우 경매방식에 의한 마지막 거래일의 평균가 <개정 2020.7.8>

- 2.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 3.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는 직전 매매거래일의 매매기준가격
- 6.2.4.3 전력거래소는 6.2.4.2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기준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6.2.4.4 가격제한폭은 매매기준가격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해당 금액 중 100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전력거래소는 매매거 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제한폭, 상한가 또는 하한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3., 2020.7.8.>
- 6.2.4.5 <삭제 2020.7.8.>
- 6.2.4.6 <삭제 2020.7.8.>
- 6.2.5 양방향 입찰방식의 매도 및 매수주문의 제한 [신설 2017.2.28.]
- 6.2.5.1 매도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공급인증서 수량을 고려하여 매도가능수량이내에서 공급인증서를 매도주문 할 수 있다.
- 6.2.5.2 <삭제 2020.7.8.>
- 6.2.5.3 매수자는 거래증거금계좌에 납부한 금액 및 당일 매도·매수대금 등을 고려하여 매수가능금액 이내에서 공급인증서를 매수 주문할 수 있다. <개정 2020.7.8.>
- 6.2.5.4. 거래증거금(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은 수수료 등 매매거래에 소요되는 비용과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1. 매수주문 접수에 그치는 경우 : 당일 접수한 매수주문 금액
 - 2. 매수주문 접수 후 거래가 성립하는 경우 : 당일 매수거래가 성립된 금액
 - 3. 매수주문 접수 후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 당일 취소 후 남은 나머지 매수주문 금액
- 6.2.5.5 매수가능금액이란 거래증거금계좌에 납부한 금액에서 거래증거금(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 6.2.5.6 전력거래소는 6.2.5.1 및 6.2.5.3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도 자 및 매수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6.2.6 양방향 입찰방식의 매매거래 성립방법 <번호변경 및 개정 2017.2.28.>
- 6.2.6.1 매매가격은 복수의 매도자와 복수의 매수자간 경합에 의한 경쟁매매로 결정한다. <개정 2017.2.28.>
- 6.2.6.2 주문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번호변경 및 개정 2017.2.28.>
 1. 낮은 가격의 매도주문은 높은 가격의 매도주문에 우선하고,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은 낮은 가격의 매수주문에 우선한다.
 - 2. 같은 가격의 주문 간에는 주문이 접수된 시간적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주문이 뒤에 접수된 주문에 우선한다.

- 6.2.6.3 6.2.6.2에 따른 가격은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의 경합에 따라 가장 낮은 가격의 매도주문과 가장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이 합치되는 경우 가장 먼저 접수된 주문의 가격으로 하고 6.2.6.2에 따른 주문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되는 주문 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신설 2017.2.28.] <개정 2020.7.8.>
- 6.2.6.4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매매거래 중단 후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 1.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 2.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전력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7.2.28.]
- 6.2.6.5 전력거래소는 양방향 입찰방식의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을 운영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문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성립된 매매거래(이하 "착오매매"라 한다)를 정정할 수 있다.
 - 1.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의 장애
 - 2.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의 프로그램 운영상의 장애
 - 3.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신설 2017.2.28.]
- 6.2.6.6 착오매매 발생 시 거래당사자와 협의 후 별지 제93-1호 서식을 전력거래소 에 제출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해 전력거래소 담당자가 거래를 취소 또는 정정 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7.2.28.] <개정 2024.10.29.>
- 6.2.6.7 전력거래소는 거래 당사자에게 매매가격, 매매수량, 거래수수료 등을 포함한 매매체결 결과를 별지 제93호 서식에 따라 매매체결 즉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스템 상에 게시한다. <번호변경 및 개정 2017.2.28., 2020.7.8.>
- 6.3 공급인증서 매매대금의 정산 및 결제(계약시장 거래의 경우) <개정 2017.2.28.. 2020.7.8.>
- 6.3.1 공급인증서 매매대금의 정산 및 등록 <개정 2017.2.28.>
- 6.3.1.1 계약당사자는 거래수수료와 거래대금 중 거래수수료를 먼저 납부를 해야 한다. 거래수수료는 정산요청일 기준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전력거래소는 수수료 납부 확인 후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별지제94호 서식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거래시스템 내에 통지한다. <개정 2017.2.28., 2020.7.8.>

- 6.3.1.2 매도자는 전력거래소가 제공하는 별지 제94호 서식등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매수자에게 거래대금을 청구해야 하고, 매수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도자에게 거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거래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인 증서 소유권이전 시점에 발행한다. <개정 2020.7.8.>
- 6.3.1.3 매수자는 거래대금의 정산결과를 전력거래소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반드시 확인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
- 6.3.1.4 6.3.1.1 내지 6.3.1.3에 의거하여 거래수수료 납부 및 거래대금 결제가 명시된 절차대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전력거래소는 해당 공급인증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8. 2020.7.8.>
- 6.3.1.5 단일계약 중 비율거래 공급인증서 체결방법은 해당 월 공급인증서 발급량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상 계약당사자가 입력한 분배율을 적용한다. 적용한 공급인증서의 결과 값이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첫째에서 반올림하여 체결하며, 반올림 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 소수점 이하 나머지는 잔여분배율의 공급인증서 결과 값에 합산하여 판매 가능한 공급인증서로 표시한다. [신설 2020.7.8.]
- 6.3.1.6 다중계약 중 비율거래 공급인증서 체결방법은 해당월 공급인증서 발급량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상 계약당사자가 입력한 분배율을 적용한다. 적용한 공급인증서의 결과 값이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후 분배율이 높은 순으로 1 공급인증서 씩 순차 적용한다. 단, 분배율이 동일 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등록이 빠른 순으로 1 공급인증서 씩 순차 적용한다. [신설 2020.7.8.]
- 6.3.1.7 수량계약일 경우 공급인증서의 체결기준은 발전월로 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표시 한다. [신설 2020.7.8.]
- 6.3.1.8 전력거래소는 공급인증서 수량계약 중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공급인증서 체결물량이 변동될 경우, 계약당사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내에서 직접 수정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7.8.]
- 6.4 공급인증서 거래수량의 확정 및 결제대금의 정산 및 결제(양방향 입찰방식에 의한 거래의 경우) [신설 2017.2.28.]
- 6.4.1 공급인증서 거래수량 및 결제대금의 확정
- 6.4.1.1 거래당사자가 전력거래소에 납부하거나 전력거래소로부터 수령하는 공급인 증서의 거래수량은 매매거래가 성립된 공급인증서 거래수량의 합계로 확정한다.
- 6.4.1.2 거래당사자가 전력거래소에 납부하거나 전력거래소로부터 수령하는 결제대 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확정한다.
 - 1. 매수자가 납부할 결제대금은 매매거래가 성립된 매매가격에 거래수량을 곱한 금액(이하 "매매대금"이라 한다)과 거래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

액)의 합계금액으로 확정한다.

- 2. 매도자가 수령할 결제대금은 매매대금에서 거래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확정한다. 단, 폐업한 사업자 혹은 간이과세자의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8.>
- 6.4.1.3 제주 소재 발전기(단,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하며 2012년 7월 이후 발전사업하가 받은 제주지역 신재생설비)의 공급인증서 결제대금은 매도주문 접수후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변환한다. [신설 2021.9.18.] <개정 2022.12.27.>

 $ARSP_i = RTP_i - \{(RSP_i - RSP_m) \div RW_i \times 1,000 \times 0.9\}$

여기서,

ARSP_i(Adjusted REC Settlement Price) : 현물시장 제주 REC 변환 정 산가격

RTP_i(REC Trade Price) : 현물시장 REC 거래가격

RSP_i(Renewable Settlement unit Price of Jeju):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제주REC 발전 월의 해당 설비의 정산단가(제2.4.4조의2에 따른 긴급정산 상한가격이 해당 설비에 적용될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이를 반영하여 산정)

즉, 설비용량 100kW이상 발전기의 경우

$$\label{eq:RSP} \text{RSP}_{\text{i}} = \ \frac{\displaystyle \sum_{t} (MGO_{i,t} \times Min(SMP_{t}, EPC_{X}))}{\displaystyle \sum_{t} MGO_{i,t}}$$

단, 사용전검사 검사필증 기준 설비용량 100kW미만 발전기의 경우

$$RSP_{i} = \frac{\sum_{t} (MGO_{i,t} \times SMP_{t})}{\sum_{t} MGO_{i,t}}$$

RSP_m(Renewable Settlement unit Price of the main land):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제주REC의 발전 월에 해당하는 육지의 월 가중평균SMP(단, 제주 신재생 설비 월별 정산단가에 제2.4.4조의2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될 경우 육지의 월 가중평균SMP에 긴급정산상한가격을 반영하여 산정)

 $RW_i(REC\ Weight)$: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제주REC의 가중치

i: 개별 발전기. m: 육지지역

- 6.4.2 결제내역의 통지
- 6.4.2.1 전력거래소는 확정된 공급인증서 및 결제대금의 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당사

자에게 통지한다.

- 6.4.2.2 전력거래소는 결제내역을 확정한 때에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게시하며, 거래당사자는 결제내역이 게시된 때 그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8.>
- 6.4.3 매매대금의 청구
- 6.4.3.1 매도자는 6.4.2.1의 통지에 따라 매매거래 성립일로부터 14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이내 전력거래소에 매매대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거래증빙 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7.8., 2024.10.29.>
 - 1.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17조에 따라 발행일자를 공급시기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 2.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17조에 따라 발행일자를 공급시기로 하는 전자계산서
 - 3. 그 외의 경우 별지 제 128호 서식의 영수증 사본 <개정 2024.10.29.>
- 6.4.3.2 전력거래소는 6.4.3.1의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6.4.3.3 <삭제 2024.10.29.>
- 6.4.3.4 6.4.3.1의 규정위반 등의 원인으로 전력거래소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 등 제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한 해당 회원사가 모두 부담한다. 전력거래소는 해당금액을 회원의 거래대금에서 차감하거나 회원으로부터 직접 입금받을수 있다. 단, 전력거래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7.8.]
- 6.4.3.5 <삭제 2024.10.29.>
- 6.4.3.6 <삭제 2024.10.29.>
- 6.4.3.7 매도자는 6.4.3.1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 서 발급기한을 초과하여 거래되지 않은 REC수량의 거래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범위에서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매도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0.29.]
- 6.4.4 결제지시
- 6.4.4.1 전력거래소는 거래당사자가 이전하여야 할 공급인증서 및 지급하여야 할 결제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급인증서 이전 및 결제대금 지급의 지시(이하 "결제지시"라 한다)를 한다. <개정 2020.7.8.>
 - 1. 공급인증서의 경우 :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서 자체 처리 후 신재생에 너지법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통지
 - 2. 결제대금의 경우 : 결제은행에 이체를 지시

- 6.4.4.2. 전력거래소는 6.4.4.1의 결제대금 이체를 위한 결제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결제은행의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 1. 결제은행계좌의 제공 및 관리
 - 2.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른 결제대금이체
- 6.4.4.3. 전력거래소는 결제은행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1. 규칙에서 정한 결제은행의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전력거래소와 결제은행 간에 체결한 약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3. 결제은행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결제은행으로서의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 4. 전력거래소와 지정된 금융기관 쌍방이 결제은행의 지정해지를 합의한 경우
- 6.4.4.4 6.4.4.1의 결제대금 지급의 지시는 6.4.3.1의 거래증빙 문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7.8.>
- 6.4.4.5 매매거래 성립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하여 결제지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급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력거래소는 매도자에게 결제대금 지급 을 거부하고, 매수자의 요청계좌로 결제대금을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0.7.8.]
- 6.4.5 공급인증서 및 결제대금의 이전·지급
- 6.4.5.1 결제지시가 있는 경우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시스템을 통해 거래 및 정산정보를 에너지공단에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7.8.>
- 6.4.5.2 결제지시가 있는 경우 결제은행은 결제대금을 결제계좌에서 결제대금을 수 령할 거래당사자의 결제계좌(회원이 결제대금 수령을 위하여 사전에 전력거 래소로 통지한 자기명의의 계좌를 말한다)로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 6.4.5.3 전력거래소는 매도자에게 공급인증서 매매대금을 지불함으로써 책임을 면한다.
- 6.4.5.4 거래당사자는 원활한 결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력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7.8.]
- 6.4.6 <삭제 2020.7.8.>
- 6.4.6.1 거래당사자는 원활한 결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력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6.4.6.2 전력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거래당사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 6.4.7 권리양도 및 압류·가압류 <개정 2020.7.8.>
- 6.4.7.1 거래당사자는 공급인증서 거래를 통해 전력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6.4.7.2 전력거래소는 거래당사자가 6.4.7.1을 위반한 경우 거래당사자에 대한 공급 인증서 이전 및 매매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6.4.7.3 전력거래소는 6.4.7.2가 정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 거래당사자에게 별지 제 116호 서식에 따라 위반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전자우편, SMS 등) 한다. <개정 2020.7.8.>
- 6.4.7.4 전력거래소는 압류·가압류된 공급인증서 거래대금을 공탁하거나 또는 지급에 관하여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7.8.]
- 6.5 거래수수료 <번호변경 2017.2.28.>
- 6.5.1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는 신재생에너지법 지침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1REC당 50원을 기준금액으로 하며 공급인증서 거래량과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 6.5.2 산출된 수수료는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공급인증서 거래와 관련한 제세공과금은 거래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별도 부담한다.
- 6.5.3 거래당사자는 6.5.1에 따른 거래수수료를 각각 전력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100kW미만 용량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부터 발생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7.2.28.>
- 6.5.4 <삭제 2020.7.8.>
- 6.5.5 6.5.3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소유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는 매수자에 한하여 거래수수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2.28.>
- 6.6 공급인증서 소유권 이전 및 재판매 금지 <번호변경 2017.2.28.>
- 6.6.1 매매체결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소유권 이전 시점은 매수자의 거래대금 지급 확인 시점으로 한다. <개정 2019.12.13., 2020.7.8.>
- 6.6.2 매수자는 반드시 매도자에게 거래대금 지급 후 거래대금 확인처리 하여야 하며, 전력거래소는 필요시 거래대금 지급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매수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자의 거래대금 지급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급인증서의 소유권을 매수자로 이전할 수 있다. 단, 6.3.1.1에 의거하여 거 래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13., 2020.7.8.>
- 6.6.3 거래시장을 통하여 매수한 공급인증서는 거래시장을 통하여 다시 매도할 수 없다.
- 6.7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안정화 노력 <번호변경 2017.2.28.>
- 6.7.1 <삭제 2024.3.28.>

7.0 의무이행비용 정산기준

7.1 공급의무자에 대한 정산

7.1.1 제11.2.2조에 따른 공급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비용을 익월 거래시간별로 균등 배분하여 공급의무자의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용 발전기에 적용한다. <개정 2017.12.29.> 즉.

$$RPS_{i,t} = RPS_i \times \frac{1}{NT}$$

RPS_i(Renewable Portfolio Standard payment) : 공급의무자 RPS 의무 이행비용 정산용 발전기에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금 <개정 2017.12.29.>

RPS_{i,t}(Renewable Portfolio Standard payment) : 공급의무자 RPS 의무 이행비용 정산용 발전기에 거래시간별로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 행비용에 대한 정산금 <개정 2017.12.29.>

NT(Number of Trading periods in a month) : 1개월 동안의 거래시간

- 7.2 전력구매자에 대한 정산 <개정 2021.7.1.>
- 7.2.1 제11.2.3조에 따른 전력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이행비용은 공급의무자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용 발전기에 적용된 의무이행비용 정산금 총액에 개별 전력구매자가 구매한 전력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1.7.1.>

가.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이행비용 [신설 2021.7.1.]

$$RSS = \sum_{i} RPS_{i} \times \frac{\sum_{t} TET_{t} - \sum_{d} \sum_{t} PEL_{d,t} - \sum_{k} \sum_{t} PEC_{k,t}}{\sum_{t} TET_{t}}$$

여기서,

RS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Settlement for Sales Company) :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

RPS_i(Renewable Portfolio Standard Payment) : 공급의무자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용 발전기에 적용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금

 $TET_t(Total\ Energy\ Traded)$: 전력시장 전체 발전기의 이행년도 거래시간에 대한 전력거래량(월간정산의 경우, 정산 전전월의 거래시간에 대한 전력거래량)

 $PEL_{d,t}(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 구역전기사업자의 이행년도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월간정산의 경우, 정산 전전월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PEC_{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이행년도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월간정산의 경우, 정산 전전월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나.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이행비용 [신설 2021.7.1.]

$$RSL_{d} = \sum_{i} RPS_{i} \times \frac{\sum_{t} PEL_{d,t}}{\sum_{t} TET_{t}}$$

여기서,

RSL_d(Renewable Portfolio Standard Settlement for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금

다. 직접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이행비용 [신설 2021.7.1.]

$$RSC_k = \sum_{i} RPS_i \times \frac{\sum_{t} PEC_{k,t}}{\sum_{t} TET_t}$$

여기서,

 RSC_k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Settlement for Consumer) : 직접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에 대한 정산금

- 7.3 의무이행비용 산정 [신설 2017.12.29.]
- 7.3.1 7.1 내지 7.2의 의무이행비용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에 따른다.
- 7.4 공급의무자별 연간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 [신설 2024.10.29.]
- 7.4.1 7.3의 연간 의무이행비용 산정은 공급의무자가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도 2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한 공급인증서를 대상으로 한다.
- 7.4.2 공급의무자별 연간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은 공급의무자별 연간정산 산정금 액에서 7.4.3의 공급의무자별 월간정산 지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7.4.3 7.4.2의 공급의무자별 월간정산 지급금액이란 공급의무자가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한 공급인증서 중 월간 정산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말한다.
- 7.4.4 공급의무자가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한 공급인증서 중 7.4.3의 월간정산으로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7.4.2의 연간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으로 지급한다.

8.0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 8.1 거래시스템의 설치
- 8.1.1 전력거래소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공급 인증서의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담당하는 거래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야 한다.
- 8.2 거래시스템의 기능

- 8.2.1 거래시스템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참여자 승인
 - 2. 현물시장 개설
 - 3. 공급인증서 현물거래
 - 4. 계약시장 개설
 - 5.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 6. 공급인증서 거래에 관련한 정보취득
 - 7. 거래시장에 대한 감시
 - 8. 거래시장의 정산 및 결제
 - 9.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 및 평균거래량 정보 공개
 - 10. 기타 거래시장 운영에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 등
- 8.3 거래시스템의 운영
- 8.3.1 거래시스템 가동시간은 1일 24시간 연속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 8.3.2 전력거래소는 거래시스템의 운영상 중대한 장애 발생 또는 업무상 시스템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거래시스템 정지계획을 수립하여 시스템이용 자에게 통지하고 시스템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단, 사안이 긴급하여 정지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 없이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다.
- 8.3.3 공급인증서 거래회원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의 운영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접속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 8.4 거래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
- 8.4.1 전력거래소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장애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유지관 리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최적의 상태로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8.4.2 전력거래소는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거래시스템 점검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개발 등 적극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